

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

1. 펀드명 : IBK 밸류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4호[주식]

2. 주요 변경 사항

- ① 환매수수료 제거
- ②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(2017.05.08)
- ③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연환산 표준편차 변경 (14.0%→13.8%)
- ④ 결산에 따른 확정된 재무현황 및 회사정보 업데이트

3. 시행일 : 2018년 04월 24일

4. 변경 대비표

항 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부 8.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[모펀드 주요 투자 대상] 나. 투자제한 동일종목투자	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(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 되, -- 다만,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. 가) (생략) 나) (생략) - <u>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 합투자증권(금융투자업규정 제4-52조의 규 정에 의한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증권은 제외),</u>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·예 탁하여 취득한 채권에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30%까지 투자하는 경우	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(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 되, -- 다만,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. 가) (생략) 나) (생략) -- <u>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(투자 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구에 한정한다)의 집합투자증권,</u> 법시행령 제 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 거나 예치·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투자 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경 우
제2부 8.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. 투자제한 [투자한도 및 제한 의 예외]	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로 불가피하게 --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 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	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--투자한도를 초과하 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 (부도 등으로 <u>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 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 니하고는</u>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 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 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
제2부 10.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연환산 표준편차 : <u>14.0%</u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연환산 표준편차 : <u>13.8%</u> (직전결산일 기준 표준편차: 14.0%)

<p>라.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</p>		
<p>제2부 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. 환매 (3) 환매수수료</p>	<p>(생략)</p>	<p><u>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.</u></p>
<p>제5부 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. 수시공시 (2) 수시 공시</p>	<p>(생략) --<신설>--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</p>	<p>(현행과 같음)--<u>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(부동산·특별자산 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)인 경우</u> 1)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2)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(다만,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) 3) 지상권·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·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·변경 4)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) --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</p>
<p>투자신탁 결산 및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정보 갱신 등</p>	<p>-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운용전문인력 현황 자료 -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- 성과 및 회사 정보 등 갱신

간이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

1. 펀드명 : IBK 밸류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4호[주식]

2. 주요 변경 사항

- ① 환매수수료 제거
- ② 최근일 기준 회사정보 갱신

3. 시행일 : 2018년 04월 24일

4. 변경 대비표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I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	<생략>	환매수수료 삭제
투자신탁 결산 및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정보 갱신 등	-	- 운용전문인력 현황 자료 - 성과 관련 정보 등